

1976年度 不正畜產物及類似都賣行爲圓束計劃 —서울特別市제공—

- 서울시는 75년 10월 1일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시행이후 몇군데에 도계장 설치를 허가 ○
- 해줬으며, 허가된 도계장 이외에서는 도계를 뜯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고, 그동안 각자 ○
- 역별로 고발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비위생적으로 끌을 잡아 팔아 공중위생이나 환경 위생에 ○
- 큰 문제점을 주던 생닭매매업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의 76년도 부 ○
- 정 축산물 및 유사도매 행위 단속 계획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발췌 게재하여, 좀더 준법 ○
- 정신의 앙양을 고취시켜 빠른 시일내에 유통질서를 바로 잡자는 의도하에 게재한다 <편집자> ○

1. 目的

- 가. 不正畜產物의 市中流通을 根絕하여 市民保健向上에 寄與한다.
- 나. 類似都賣行爲의 防止로 肉類의 流通秩序를 確立한다.

2. 圓束期間

1976年 1月~12月(年中)

3. 圓束班編成

가. 本廳圓束班

- (1) 班長 1名
- (2) 圓束員 10名(獸醫職6, 保社局協助人員 2, 警察官 2)
- (3) 運轉員 2名
- 計 13名
- (4) 裝備: 車輛 2台
- (5) 組編成 및 裝備

區分 組別	獸醫職	警察官	保社局 協助人員	計	裝備
1	3	1	1	5	車輛 1台
2	3	1	1	5	"
計	6	2	2	10	" 2 :

※ 班員編成 差出은 警察局長 및 保社局長의 協助를 받는다.

나. 區圓束班

本廳圓束班에 準하여 各區 實情에 맞도록

編成運營한다.

다. 地域擔當

隨時交替擔當

4. 圓束對象

- 가. 家畜의 密屠殺行爲, 不正肉販賣運搬行爲 및 保管行爲(소, 돼지, 닭, 개)
- 나. 不正乳, 乳肉加工品 販賣製造行爲
- 다. 類似都賣行爲
- (1) 未上場 地方 肉類販賣行爲
 - (2) 地方으로부터 肉類密搬入行爲 및 車輛

5. 圓束要領

- 가. 家畜密屠殺行爲 및 不正肉販賣 運搬行爲 圓束
- (1) 各組別로 地域別 擔當區域內의 食肉販賣業所, 料食業所, 畜產物作業場 및 屠鷄, 屠犬 販賣所를 巡回圓束한다.
 - (2) 虐犯地域에 對한 情報活動 및 巡回圓束
 - (3) 必要에 따라 각組別로 虐犯地域의 交通要路를 封鎖 不正肉 運搬者 및 車輛圓束
 - (4) 肉類盛需期(年末, 年始, 名節)에 特別 圓束期間을 設定 集中圓束한다.
 - (5) 類似都賣行爲圓束

나. 不正乳 및 乳肉加工品 圓束

- (1) 無許可處理 및 加工業
- (2) 有許可業所의 未検査品의 搬出版賣行爲
- (3) 不良品의 取扱方止 指導啓蒙

6. 屠鷄, 屠犬團束

닭, 개의 密屠殺行爲 및 同販賣行爲는 地域의 與件을勘案하여 各 區廳에서 專擔하고 必要에 따라 本廳에서 支援團束한다.

7. 密屠殺 및 不正肉販賣 申告센타 設置

가. 產業局 農政課 및 各 區廳 衛生課에 密屠殺申告센타를 設置하고 電話番號를 一航市民에게 周知시키며 民間人 情報網을 構成 最大한 活用한다.

나. 申告센타 電話番號

申告處	電話番號	申告處	電話番號
서울시農畜課	(75)7648 7661 交換7081	西大門區衛生課	(74) 0700
鍾路區衛生課	(74)2855	麻浦區	(71)2247
中 区 "	(26)0095	龍山區	(44)3072
東大門區 "	(93)1902	永登浦區	(63)9625
城 東 区 "	(52)9934	冠岳區	(67)0602
城 北 区 "	(92)0532	江南區	(57)6938
道峰區 "	(98)4002		

다. 申告센타에는 申告接受簿을 備置 申告處理事項을 記載한다(書式 別添)

8. 協議會 開催

가. 다음과 같이 密屠殺行政協議會를 月 1回 開催 密屠殺根絕의 進度分析 및 團束方案을 模索한다.

- (1) 開催場所——產業局長室
- (2) 開催日時——別途通知
- (3) 參席對象——產業局長, 農政課長, 商政課長, 保健行政課長, 市警保安課長, 都賣市場代表

9. 借 置

가. 不正畜產物犯法者 措置

(1) 密屠殺行爲者 教唆者 및 幫助者は 畜產物 加工處理法 第3條 및 第21條 1號에 依據 司直當局에 告發한다.

(2) 不正乳 및 乳肉加工品 加工行爲者 教唆者 및 幫助者は 同法 第3條 및 第21條 1號規定에 依하여 司直當局에 告發한다.

(3) 不良品은 畜產物加工處理法 第17條 規定에 依하여 廢棄 또는 押收한다.

(4) 官許食肉販賣業所 및 料食業所에서 犯法行爲(不良品取扱 鸡, 개 包含)를 摘發하였을 時는 畜產物加工處理法 第14條 및 第21條 3號에 依據 司直當局에 告發하는 同時に 許可官署의 長에게 通報하여 農政11634~2437(68. 9. 26) 密屠殺 取扱業所의 行政借置強化 및 保行 1436~2111 (75. 12. 17) 屠鷄, 屠犬規制에 對한 業務協助指示에 依據 行政處分(營業許可取消, 1年間 同一 場所에서 許可不可)로 토록 한다.

(5) 有許可 畜產物加工場에서 犯法行爲를 하였을 때는 司直當局에 告發과 同時 行政處分한다.

(6) 運搬者 및 違反車輛에 對하여는 同法 第14條 및 第21條 3號의 規定에 依하여 司直當局에 告發하고 觀光運輸局에 通報 行政借置케 한다.

(7) 違反者는 稅務機關에 通報하여 課稅借置케 한다.

나. 類似都賣行爲

(1) 官許業所는 該當區廳 衛生課에 指示, 行政處分토록 한다.(1回 違反 營業停止 1個月, 2回違反 2個月, 3回違反 許可取消處分)

(2) 上場이 可能한 肉類는 이를 都賣市場에 引渡 上場케 한다.(特別地 屠畜場으로서 當市에 指定 通報 있는 屠畜場)

10. 押收肉處理

가. 押收된 不良品(不正肉類)은 畜產物加工處理法 第18條 規定에 依據 廢棄(燒却, 埋沒)하되 飼料로 利用할 수 있는 것은 動物飼料 軍犬飼料 用으로 提供한다.

11. 其他事項은 從前指針에 準한다.



畜產物 加工處理法 발췌

區 分	法 條 文	備 考
1. 密屠殺	<p>第 3 條(作業場)</p> <p>① 獸畜의 屠殺解體와 乳의 處理, 獸肉乳 및 卵의 加工行爲는 이 法의 規定에 依한 屠畜場, 乳處理場 또는 畜產物加工場에서 하여야 한다.</p> <p>② 以下省略</p>	<p>罰 則</p> <p>第 21 條 1 號 (3年以下懲役, 100萬원 以下罰金)</p>
2. 不良品 販賣	<p>第 14 條(不良品의 販賣禁止)</p> <p>① 食肉販賣業者, 食肉運搬業者 또는 飲食店營業者는 檢查를 받지아니한 畜產物과 變質한 畜產物을 貯藏, 運搬, 販賣, 陣列 또는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省 略</p>	<p>"</p> <p>第 2 條 3 號 (同 上)</p>
3. 不良品 指定	<p>第 17 條(不良品의 廢棄處理)</p> <p>農水產部長官 또는 道知事은 不良品에 對하여 檢查員으로 하여금 이를 廢棄, 押收 또는 收去하게 하거나 不良品의 所有者 또는 所持者에 對하여 公衆衛生上 危害가 發生하지 아니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p>	<p>"</p> <p>第 23 條 5 號 (6月 以不 懲役, 30萬 원 以不 罰金)</p>

신 고 접 수 부

결 재	신고년월일	신 고 자		신고내용	처리자명	처리결과
		주 소	성 명			

☆ 월간양계 구독찬조회원 모집 ☆

대한양계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양계” 및 기타 간행물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경영관리, 질병위생 등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본회에 문의 하십시오.

- 구독찬조회비 : 1년 3,000원
- 협회회원 가입비 : 2,000원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양동 44-28 (축산회관 4층)

전화 22-3571, 3572, 6917. <서울 대체구좌 519272>